

Samil PwC Monthly Newsletter

July 2024

Hot Topic

최근 경제지표로 본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



Contents

Hot Topic

- 최근 경제지표로 본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 03

Sustainability

- Sustainability 국내외 동향 11

GAAP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17

G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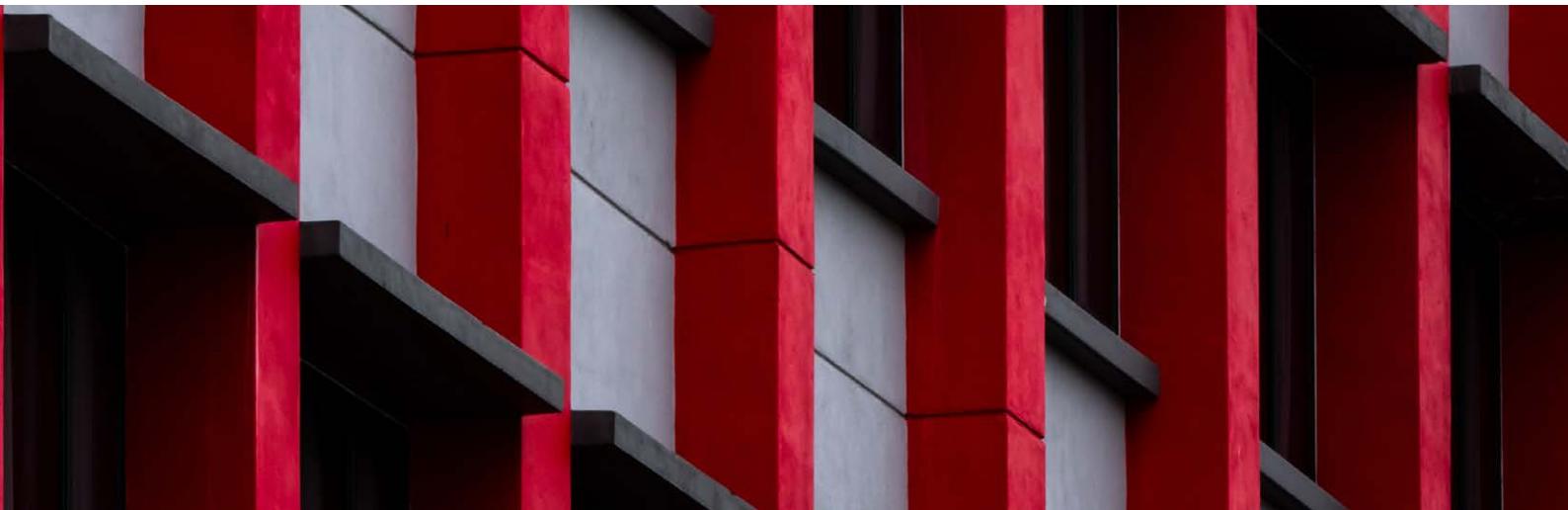
- 금융업 상장사 주석 재무공시를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 상장사 지원 더욱 강화 (금융감독원) 25
-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 3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감독원) 34

Tax

- Tax News 37
- 최신 주요 개정 동향 41
- 최신 예규·판례 43

K SOX

- K SOX 동향 49



삼일PwC 이달의 Contents

Insights



Samil PwC 프리미어 부동산 레터 Vol.10

(July 2024)

- 현재 부동산 시장은?
- 2009년의 기억

[보러가기 \(Click\)](#)

YouTube



한국 기업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지난 5월 23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한
‘변화의 시대, 이사회의 길을 묻다’ 세미나 세션2 박경서 교수님의
강연 영상입니다.

[영상 보러가기 \(Click\)](#)



Hot Topic

최근 경제지표로 본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

[저자: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최근 수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보듯이 내수는 수출 경기와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내수와 수출 경기와의 차별화 및 수출 내에서도 IT 분야와 비IT 분야 와의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국경제의 향후 전개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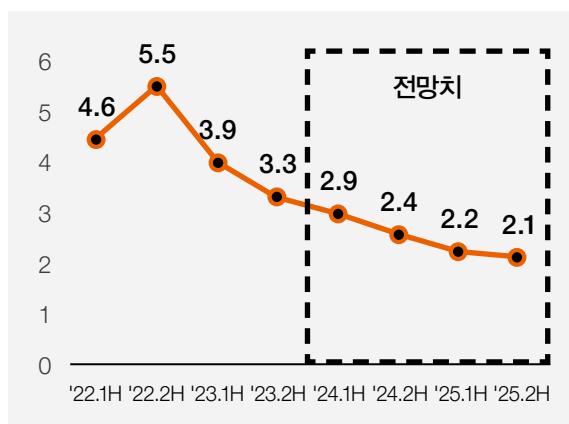
1. 2024년 한국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 확대 vs. 2025년은 글쎄?

- **GDP성장률:** 2023년 1.4% … 2024년 2.5%로 전망(한국은행, 2024년 5월 기준)되고 있음. 이는 연초 대비 전망치가 +0.4%p 상향된 것
 -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에 기인
 - 일부 소비흐름도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부문 역성장 지속으로 뚜렷한 개선 기대는 어려움
- 한편, 물가는 달러 강세 지속으로 상방압력이 다소 커졌으나, 소비 부진으로 당분간 2% 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 중으로는 점차 2% 중반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국내 GDP 분야별 전망 (단위: %, %pt)

구분	2023	2024E	2025E
GDP	1.4	2.5(+0.4)	2.1(-0.2)
민간소비	1.8	1.8(+0.2)	2.3(-)
설비투자	0.5	3.5(-0.7)	3.9(+0.2)
건설투자	1.3	-2.0(+0.6)	-1.1(-0.1)
재화수출	3.1	5.1(+0.6)	3.0(-0.6)

소비자물가 상승률



* 출처: 한국은행 (2024년 5월)

* (괄호): 2024년 1월 전망 대비 변화

* 출처: 한국은행

2.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 심화

수출 IT 제외 품목은 지지부진

- 6월 수출은 YoY +5.1%로 지난 4~5월 수출 증가율이 각각 +13.6%, 11.5%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선방한 실적으로 평가

- 일평균 기준으로는 12.1% 증가한 571억 달러를 기록. 다만 대다수 품목의 일평균 수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감소 … 수출 개선 지속에 대한 의구심
-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YoY -7.5%)

+ 따라서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음. 다만 흑자의 내용을 보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에 기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리 건강하다고는 보이지 않음

월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구분	2023. 12	2024. 1	2024. 2	2024. 3	2024. 4	2024. 5	2024. 6
수출(YoY, %)	5.0	18.2	4.4	3.1	13.6	11.5	5.1
對미	20.7	27.1	9.0	11.4	24.3	15.6	14.7
對EU	-19.9	5.2	-8.4	-6.8	-7.1	-2.2	-18.2
對일본	2.4	10.8	1.2	-11.8	18.1	2.4	-6.9
對중국	-3.0	16.2	-2.4	0.4	10.0	7.6	1.8
일평균	10.5	-10.8	11.6	-1.3	-2.9	8.0	0.6
수입(YoY, %)	-10.9	-7.9	-13.2	-12.3	5.4	2.0	7.5
일평균	9.0	-4.0	3.5	-0.9	2.4	1.6	-5.6
무역수지(십억 달러)	4.5	0.4	4.1	4.3	1.5	4.9	8.0

※ 출처: 무역협회, 산업통산자원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6월 수출의 특징은 ‘미국 밸류체인’과 AI 산업 확산 등에 따른 ‘IT’ 관련만 증가했다는 점

- 6월 수출은 여전히 반도체, 컴퓨터 등의 IT 부문의 강세에 기인했으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YoY +50.9%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음. 컴퓨터(+58.9%), 디스플레이(+26.1%) 등도 큰 폭의 성장세

+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AI 서버 출하량이 증가하고, 고부가 메모리 제품(HBM)과 기업용 고용량 SSD 수요가 확대된 영향에 기인. 또한 3분기 AI 스마트폰,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수출이 견조했음

- 이차 전지, 자동차부품, 철강, 일반기계 등은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
- 전반적으로 경기민감업종은 양분화된 양상(정유 +8%, 석유화학 +5%, 철강 -24%, 기계 -8%)

+ 정유는 정제 마진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ASEAN 지역(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현지 자동차 연료 수요 확대로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한 반면, 철강과 기계는 중남미의 철강제품 수입사전 신고제도 개편과 글로벌 건설경기 둔화로 낙폭이 확대되었음
+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부진(자동차 -0.4%, 가전 -0.3%, 바이오헬스 -6%, 화장품 +6%)

- GVC 재편 수혜를 받은 對미, 對인도 수출 견조한 가운데 對중 수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 지역별 對미 수출이 전체의 19.3% 차지했으며, 아세안과 남미향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로존향 수출은 유로존 경기부진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중
+ 전체 한국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對중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주력수출품목별 수출 증가율

연/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차부품	컴퓨터	이차 전지
2023. 1	-44.5	-24.0	21.8	-25.9	14.7	-36.0	-16.2	-63.8	9.9
2023. 2	-42.4	-18.2	27.0	-9.9	10.2	-41.0	13.2	-64.9	24.4
2023. 3	-34.5	-24.6	63.6	-10.9	-18.6	-41.6	-5.6	-57.6	0.6
2023. 4	-41.0	-23.6	40.3	-10.9	-29.0	-29.3	-1.7	-73.3	-4.6
2023. 5	-36.2	-26.7	49.2	-8.9	-34.9	-7.4	-0.8	-57.5	-5.2
2023. 6	-28.0	-22.3	58.3	3.1	-40.0	-11.1	5.5	-53.5	17.0
2023. 7	-33.6	-23.7	15.0	-10.2	-39.3	-4.6	-0.5	-33.4	-16.1
2023. 8	-20.6	-11.4	28.7	-11.3	-32.6	4.1	5.9	-54.6	-21.3
2023. 9	-13.6	-5.0	9.4	7.3	-6.5	4.0	-3.6	-53.9	-16.4
2023. 10	-3.1	-3.2	19.7	-0.9	16.1	15.5	-3.8	-30.5	-14.5
2023. 11	12.9	6.1	21.5	-11.1	-6.7	5.8	3.6	-29.3	23.1
2023. 12	21.7	4.0	17.8	-5.2	-4.0	11.0	-10.8	-34.5	-0.7
2024. 1	56.2	4.5	24.7	2.0	13.6	2.1	10.2	37.5	-25.4
2024. 2	66.6	-2.7	-7.9	-10.1	-3.7	20.2	-3.1	17.9	-18.7
2024. 3	35.8	-1.8	-5.0	-7.9	3.6	16.1	-6.9	24.5	-23.0
2024. 4	56.1	12.3	10.3	-5.7	18.9	16.3	2.9	76.2	-20.0
2024. 5	54.5	7.4	4.8	-11.9	8.4	15.8	-5.3	48.4	-19.4
2024. 6	50.9	4.8	-0.4	-24.2	8.4	26.1	-11.6	58.9	-20.4

※ 출처: 통계청, 삼일PwC경영연구원

■ 품목 및 지역별 수출 실적을 볼 때,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구심 증가

- 일평균 수출액이 2024년 들어 지속적으로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 MoM 기준으로 단가(P)와 물량(Q)이 동반 개선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임

- 따라서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하락할 전망. 반도체의 경우 3분기는 기저효과가 여전하나 4분기 들면서 기저효과도 줄어들 것임

품목별 단가(P)와 물량(Q) 동향

구분	단가(P)와 물량(Q)	구분	단가(P)와 물량(Q)
반도체	동반 개선	무선통신기기	P, Q 다소 둔화
자동차	P상승, Q 소폭 둔화	석유화학	Q 둔화
자동차부품	P상승, Q 소폭 둔화	철강	P, Q 동반 둔화
디스플레이	P상승 vs. Q 소폭 둔화	기계	P, Q 동반 둔화
화장품	P 상승, Q 소폭 둔화	선박	P, Q 동반 둔화
석유제품	P, Q 다소 둔화	이차 전지	P하락, Q 큰 폭 하락

※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내수

계속 부진

■ 반면 내수 경기는 수출과 다른 부진한 상황 지속

- 5월 산업생산(MoM -0.7%), 소비(-0.2%), 투자(설비투자 -4.1%, 건설기성 -4.6%)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며 내수 부진 재확인 … 6월 내수지표 감소세 기록 가능성 높음
- 과연 이러한 내수 경기 부진이 일시적인 것일까? 대답은 ‘NO’임. 이러한 내수 부진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5월 한국의 취업자 수는 YoY 8만 명 증가해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증가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임. 최근 수출경기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IT의 경우는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증가를 이끌기 어렵고, 반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4분기에 인하하더라도 당분간 내수 경기 반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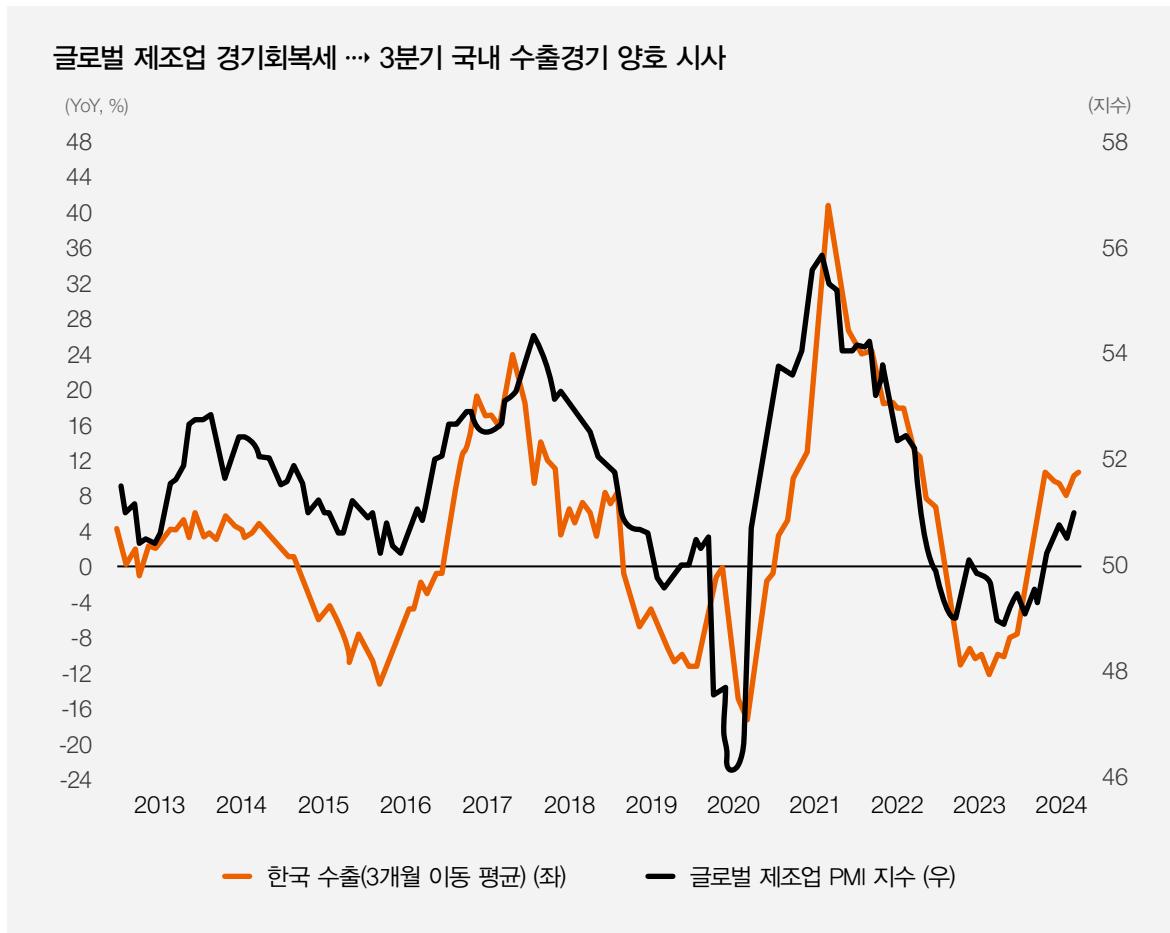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

- 6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MoM 5조 3천억 이상 증가해서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음.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데 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움직일 조짐이 있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과제인 가계부채의 구조조정과는 괴리되는 움직임이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임
-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약세 기조는 한국은행 단독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결론: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 AI 산업 투자 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 시,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품목 중심의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 미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 국내 수출의 기저효과 소멸 등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한국무역협회,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 향후 수출 회복세 강도는 중국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중국 경기 모멘텀이 예상과 다르게 강화된다면 국내 수출 증가율은 기대보다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음
- 결국 한국의 하반기 수출 모멘텀은 둔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내수 부진으로 쓸리게 될 것임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국내외 동향

1.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저자: Sustainability Platform 권리연합 파트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 지난 4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등의 공식 절차를 밟은 후 최종 발효되고, 이후 제품별 세부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법령(Delegated Act)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SPR은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ESPR의 구체적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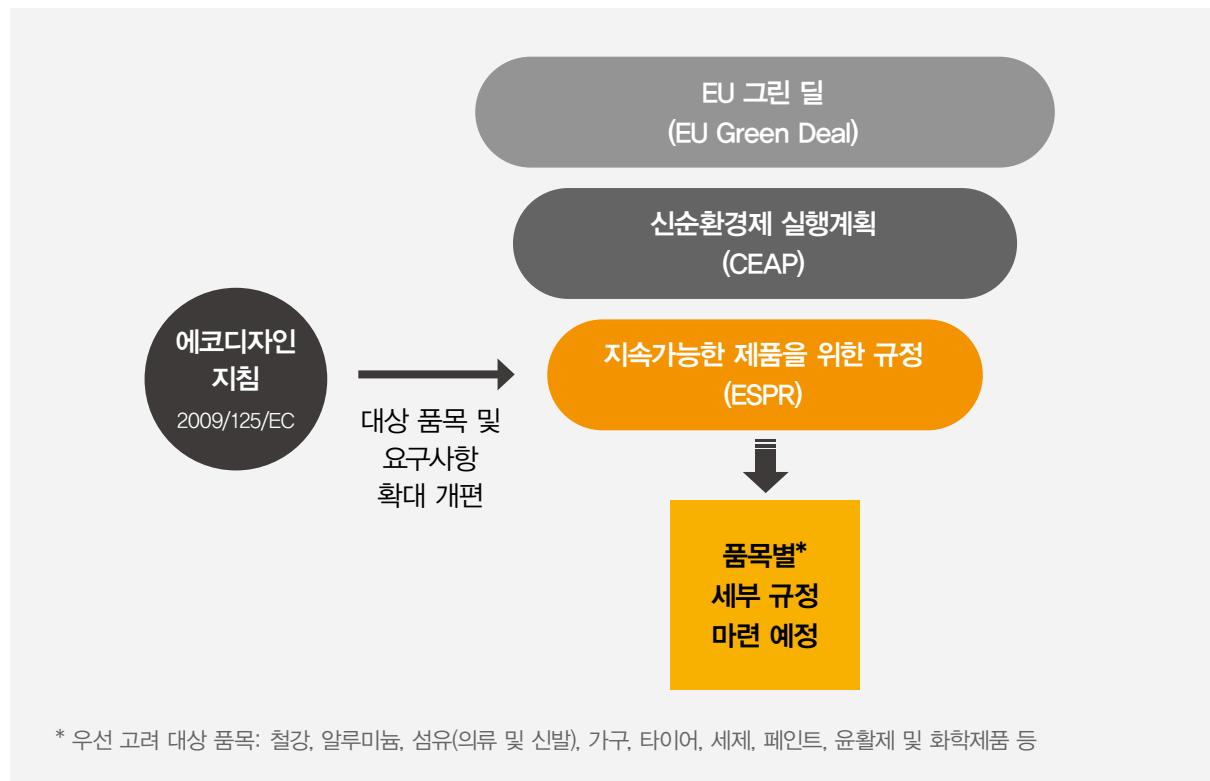
*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순환경제 위한 국가별 정책 및 규제 확산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Pw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520개 이상의 정책과 규제가 마련됐으며 일부 기업은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제품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기준을 담은 ESPR이 연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역내 기업과 EU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수출 기업은 ESP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자원 채취(Take), 생산(Make), 사용(Use), 폐기(Dispose)'로 이뤄지는 '선형경제' 시스템과 달리,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EU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ESPR'



EU의 환경 규제는 2019년 발표된 'EU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패키지에서 출발합니다. EU는 그린 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분야에 순환경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역외 의존도를 낮춰 EU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자 기존의 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개선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이 2020년 3월 마련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2년 3월 EU 집행위는 CEAP 관련 핵심 규제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The Ecodesign Directive)'의 대상 품목과 요구 사항을 확대하고 법적 지위를 격상시킨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및 관보 게재 등 공식 절차를 밟은 후 발효됩니다. 또한 EU가 지정 한 우선 대상 품목별로 적용될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규정(Regulation)은 지침(Directive)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입법 행위이며,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효력 발생

EU 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 대상

ESPR은 EU 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제품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표식인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도입 등을 기본 골자로 합니다. EU 집행위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아래 조건 등을 고려해 품목별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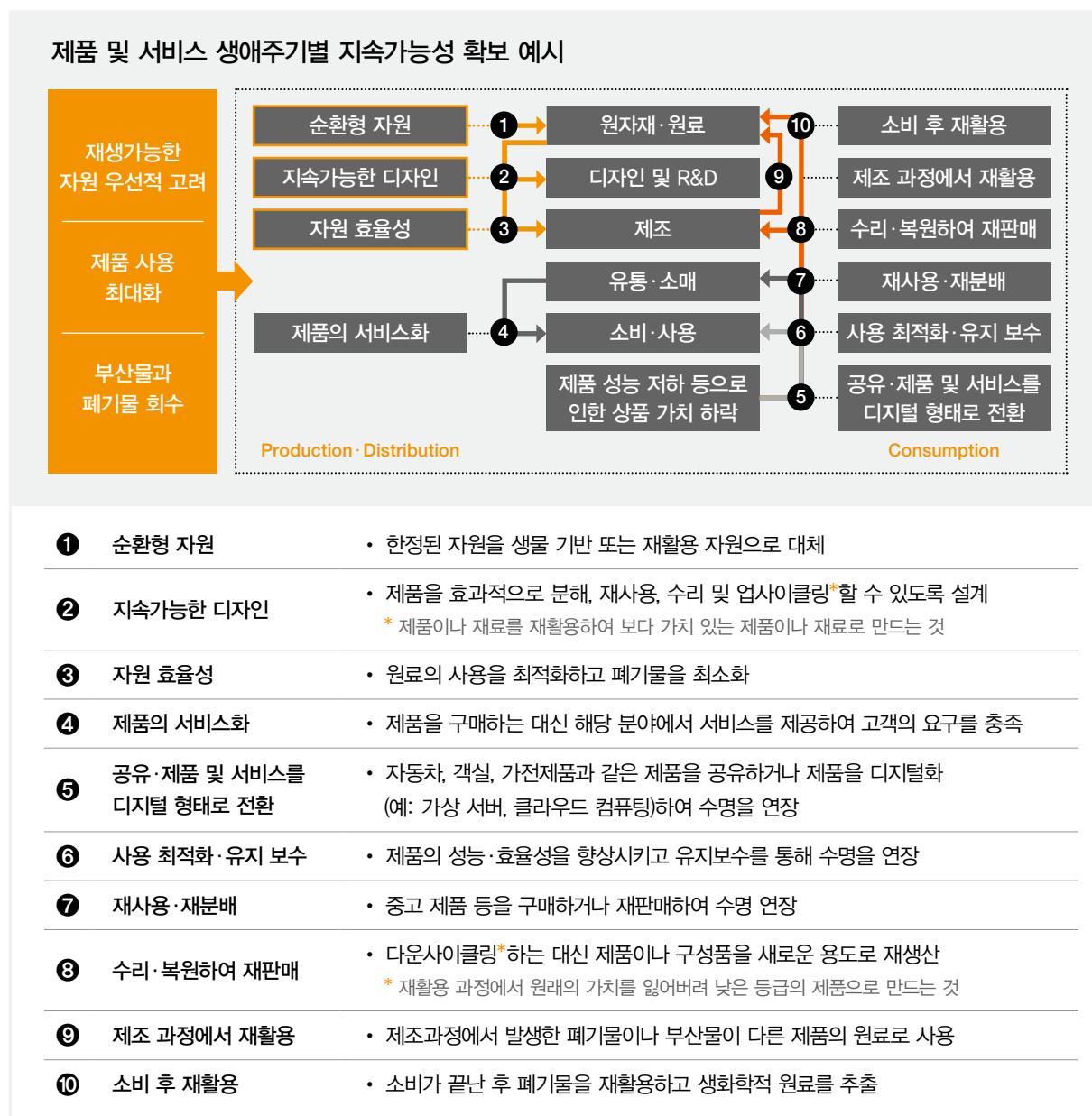
구분	내용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시장에 출시 및 공급되는 모든 제품 (※식품, 사료, 의약품, 식물 등 제외)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내구성, (B) 신뢰성, (C) 재사용 가능성, (D) 업그레이드 가능성, (E) 수리 가능성, (F) 유지보수 및 재가공 가능성, (G) 우려 물질 존재, (H) 에너지 사용 또는 에너지 효율성, (I) 물 사용 및 물 효율성, (J) 자원 사용 또는 자원 효율성, (K) 재활용 소재 비율, (L) 재제조 가능성, (M) 재활용 가능성, (N) 재료 회수 가능성, (O) 탄소 및 환경발자국 포함한 환경 영향, (P) 예상되는 폐기물 생성 품목별 하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성능 요건과 정보 표시 요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 요건) 제품별 성능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가전 제품은 에너지 효율성, 절전 모드 등의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반면, 의류의 성능 요건은 내구성, 안정성, 재활용 가능한 마감재 사용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보 표시) 제품 전 생애 주기 정보를 무료 접속 웹사이트,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또는 제품 라벨에 포함
디지털 제품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제품 여권 없이 EU 시장에서 제품 판매 불가 제품별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 제품 여권 레이아웃 및 부착 위치 등을 준수해야 함 제품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는 EU집행위가 관리하는 웹 포털사이트에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된 정보 검색 및 비교 가능 세부 규정은 2025년 12월까지 마련하여 2027년부터 시행 예정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집행위가 향후 제정할 제품별 세부 규정에 따라 기업은 제품 라벨에 포함되는 정보, 레이아웃, 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함
우선순위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 제품을 선정해 세부 규정 마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집행위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 환경 영향 개선 가능성, 시장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 적용 제품을 선정 - 우선 순위 고려 대상 품목: (a) 철강, (b) 알루미늄, (c) 직물(의류와 신발), (d) 가구(매트리스 포함), (e) 타이어, (f) 세제, (g) 페인트, (h) 윤활제, (i) 화학 물질 등
폐기 제품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직접 및 대리 폐기하는 경우 관련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유형별 연간 남은 제품 수량 및 중량, 폐기 사유 등 - 세부 내용과 형식, 공개 정보 검증 방법 등은 추후 발표

※ 출처: European Parliament, [Ecodesign Regulation](#), 2024.4.23 내용 일부 요약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대응 방안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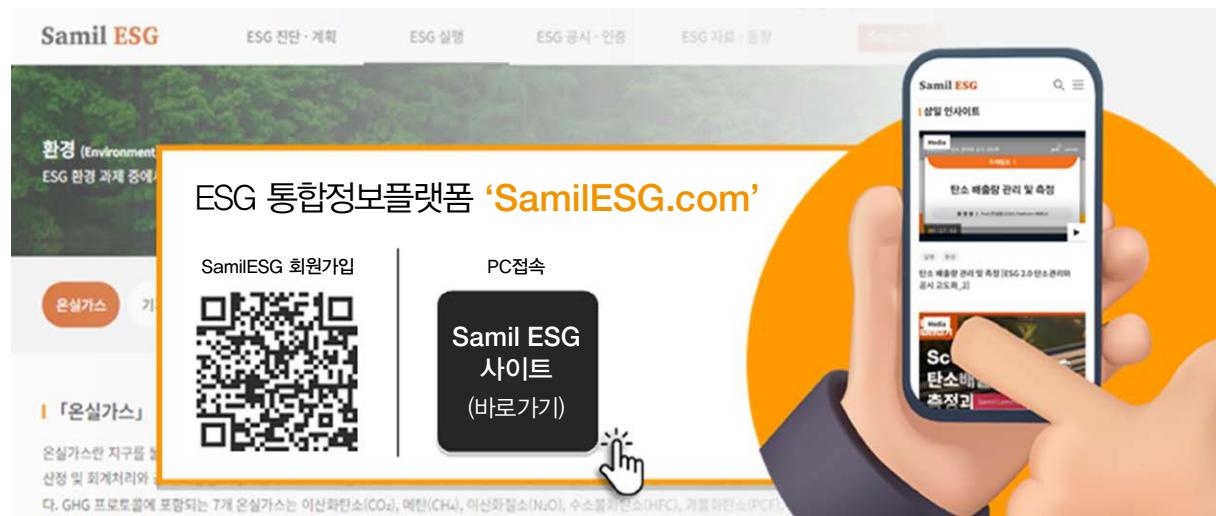
ESPR 도입은 품목별 디지털 제품 여권의 구체적 형태와 정보 범위 등 세부 요구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와 관련된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U 환경 규제는 규제 간 유기적 연관성과 법적 일관성을 가집니다. 아직 ESPR에 따른 품목별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은 EU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에서 요구하는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E5)’ 지표를 활용해 전반적인 순환경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SPR은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요구합니다. ESPR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생애주기 간 차이를 분석(Gap 분석)해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출처: PwC, [The rise of circularity](#)

기업은 향후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정보를 DPP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투자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와 시장 변화는 기업에 부담이지만,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면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GAAP

회계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음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① 수익인식 회계처리, ② 비시장성 자산평가, ③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임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1.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5단계 수익인식

- 고객과의 계약조건, 관련 사실 및 상황 등 종합적 고려



관련 주석 공시

-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

※ 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2.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 인식

- 취득 시 분류 및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 평가

- 평가기법의 일관된 적용, 합리적 가정 및 투입변수 등

관련 주석 공시

-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 측정 관련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 업종: 전 업종

3.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5단계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관련 주석 공시

- 해당 특수관계의 성격
- 거래금액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
-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당기 중 대손상각비 등

※ 업종: 전 업종

4.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가상자산 발행기업

- 자의적으로 수익 및 자산 과대계상 금지, 유보 토큰 주석공시

가상자산 보유기업

- 취득한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 고려하여 자산(부채) 계상

※ 업종: 전 업종

1. 수익인식 회계처리

- **(선정 배경)**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유의사항)**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1)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



(2) 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히 주석 공시**회계위반 예시**

- ① D사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와는 상품 매입 단가 협상과 연계하여 해당 공급자에게만 제공하는 ‘광고 및 운송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용역 계약(매출)과 상품 매입 계약(매출원가)을 별도* 계약으로 판단하여 용역 매출을 상품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매출로 계상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재화 및 용역의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

- ② E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상사급 거래가 존재함. 즉, 회사는 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하고 있음

원재료는 회사가 부품생산을 의뢰하면서 공급한 것으로,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자산)를 통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유상사급 거래의 매출 및 매입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과대계상

* 하도급업체는 회사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가는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 보유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 ③ F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을 영위중으로 설비의 납품 및 설치 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고 설비의 납품은 x1년, 설치용역은 x2년에 각각 완료하였음

다만, 계약서상 설비(제품)는 설치용역을 제공한 이후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납품과 설치용역을 구분할 수 없음에도(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 회사는 납품 완료시점(x1년)에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2. 비시장성 자산평가

- **(선정 배경)**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
- 관련 기준서(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
- **(유의사항)**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히 기재
 - (1) 비시장성 자산 인식:**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영업권의 인식요건 등에 유의
 - (2) 평가방법 점검:**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

+ 공정가치 측정시에는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 및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등 유의*

* 할인율, 목표 자본구조, 시장규모, 매출 성장률, 영구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 (3) 주석 공시사항 점검:**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 사항을 상세히 기재

회계위반 예시

- ① G사는 사업부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시, 과거 실적하락의 원인과 외부증거(경쟁업체 실적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래 매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 매출액을 과다하게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을 과대계상
- ② H사는 종속회사의 할부판매중단 등 영업에 유의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됨에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등의 손상검사를 소홀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

* 과거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및 가정의 합리성 평가 미실시, 할부중단 효과 미반영 등
- ③ I사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취득 당시 원가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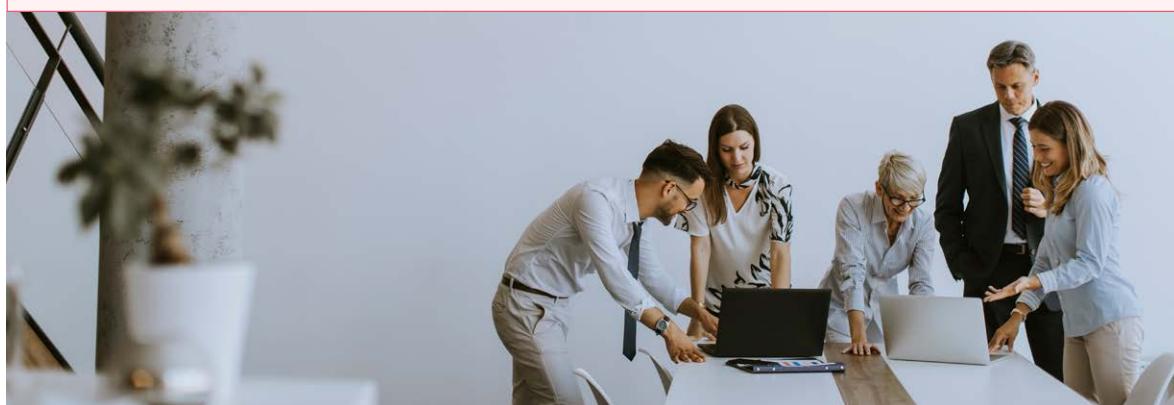
3.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 **(선정 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최근 논의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
 - *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의 이익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공시 필요
-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거래금액, 채권잔액(대손총당금 설정액 및 당기종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

회계위반 예시

- ❶ J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해외에 비영리법인(K사)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 이후 J사는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K사에 공급하고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로 매출을 인식하였음에도, 비정상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K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 ❷ L사는 종속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투자자와 체결함에 따라, 해당 약정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를 위한 사실상의 보증에 해당함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❸ M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자(N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다른 특수관계자(O사)에 대한 채무와 부당 상계함으로써 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



4. 가상자산 회계처리

■ (선정 배경)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 증대

- 지난해 말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의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공개를 위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 (2023년 12월 20일)

* 2023년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 +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 참고로,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님

■ (유의사항)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등)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 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할 필요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 또한, 가상자산 발행기업, 가상자산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모두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등에서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23.1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고)



회계위반 예시

- ① A사는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수행 의무*)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보다 앞선 토큰 이전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 백서,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백서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수행의무 별 수익인식 시기 예시

수행의무	수익인식 시기
토큰 이전(추가 의무 없음)	→ 토큰 이전 시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	→ 플랫폼 활성화 시점
플랫폼에서 토큰결제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	→ 재화·용역 제공시

- ② B사는 가상자산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보관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을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인식*

* 발행 후 내부 유보한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 ③ C사(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

*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계약, ② 가상 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수준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 [보도자료]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 2024. 6. 13]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금융업 상장사의 주석 재무공시를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하고, 상장사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시행 및 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함

2.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 20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단계적 시행

- 금융업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중 개별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 원 이상 법인부터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시행(2025년도 반기보고서)하고 단계적 확대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 요약 (12월 결산법인 예시)

구분	최초 적용시기 (비금융업) – 기안내			최초 적용시기 (금융업)		
	2023년도 사업보고서 (2024년 3월 제출)	2024년도 사업보고서 (2025년 3월 제출)	2025년도 사업보고서 (2026년 3월 제출)	2025년도 사업보고서 (2025년 8월 제출)	2026년도 사업보고서 (2026년 8월 제출)	2027년도 사업보고서 (2027년 8월 제출)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최초 적용그룹	두 번째 적용그룹	세 번째 적용그룹	두 번째 적용그룹	세 번째 적용그룹	네 번째 적용그룹
	2조 원 이상 (기시행)	5천억 원 이상 ~ 2조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10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 10조 원 미만	2조 원 미만
	156개 사	340개 사	1,825개 사	27개 사	14개 사	93개 사

* 직전 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에 따라 대상회사는 매년 변동 가능 (2023년도 결산기준 예시)

3.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시행 방안

- (적용시기) 2025년도 반기보고서(2025년 8월 제출, 12월 결산법인)부터 시행
 - 비금융업 상장법인(자산총액 5천억 원~2조 원, 340여개 사)의 XBRL 주석 재무공시 일정(2025년 3월 확대 적용) 등을 감안*
 - * 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의 지원 인력 및 회계법인의 가용 상황 등을 고려
- (적용대상) 금융업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중 개별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기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부터 우선 시행
 - 이후, 2조 원 이상(2026년도 반기보고서) 및 2조 원 미만(2027년도 반기보고서) 금융업 상장법인 등으로 순차적 시행

4. 상장사·회계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공시·회계 유관기관과 협력

- 2025년도에 확대되는 XBRL 주석공시 대상 상장법인(두 번째 적용그룹)*이 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

* ① 자산총액 5천억~2조 원 비금융업 상장사(340개 사), ②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27개 사)

최초 적용그룹(2조 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사) 주석 재무공시 – 평가

- (첫 번째 공시) 2023년도 사업보고서(2024년 3월, 156개 사)의 경우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제출한 XBRL 주석 중 일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정정하여 공시
 - * XBRL 작성 규칙 미준수(계정과목 상하위 관계 설정 등에 실수, 서로 다른 계정과목에 동일한 ID 부여 등), 감사보고서 금액과 다른 금액 입력 등
- (두 번째 공시) 2024년도 1분기 보고서(2024년 5월, 161개 사)의 경우 주요 입력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오류없이 정상 완료
 - … 최초 적용그룹 상장사의 XBRL 주석공시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상장사 지원 및 의견 수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상장사 등 업계 의견을 수시로 적극 수렴

-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14개 사)으로 구성된 'XBRL 데이터 품질 자문그룹'을 운영하여 상장사 의견을 지속 수렴(XBRL 매뉴얼 제정 등 관련)

* 2023년도 사업보고서 대상으로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장 수여 (2024년 5월 24일)

- (회계법인 지원) 회계법인과 1:1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XBRL 자문 품질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 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 전문 교육을 연중 제공

5. 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

① 상장사 지원 강화 방안 (공시 유관기관과 협력)

■ 금융감독원

- **(시범 제출 및 피드백 제공)** 재무공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상장사가 사전에 점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드백 제공(대상 상장사가 최소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 독려)
 - * (기준) 제한된 기간(8~12월) 중 자율 참여 → (개선) 연중, 최소 1회 이상 참여 독려시범 제출 홈페이지: <https://xbrlfiler.fss.or.kr> (외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제출·수정 가능) 제출한 XBRL 파일에 대한 피드백 제공(피드백 요청은 유관기관·협회 등에 신청)
 - (금융업)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 각 권역별 금융협회 신청
 - (비금융업)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신청
 - ※ 제출된 XBRL 파일은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상장사에 이메일로 피드백 제공
- **(모범사례 제공 및 실무 교육)** 기존에 제공하던 모범사례를 보강하여 우수 공시 기업의 재무공시 사례를 지속 안내하고, 상장사가 타사의 재무공시 사례(금융감독원 XBRL Viewer를 활용) 등을 참고하여 쉽게 XBRL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 실시
 - * 금융감독원 XBRL Viewer 활용 사례 및 XBRL 주석 작성 방법 등을 안내
- **(XBRL 작성 매뉴얼 마련)** 제출인과 회계법인 등이 XBRL 재무제표 작성 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주석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여 연내 제공
 - * 美 SEC 등 해외 감독기관의 매뉴얼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우리나라의 제반 환경 등을 반영
- **(1:1 소통채널 및 기술지원 확대)** 각 금융협회·공시 유관기관 등과의 1:1 소통 채널 마련 및 금융감독원 XBRL 유지보수 IT전문 인력 보강을 통한 기술지원 확대

■ 공시 유관기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 **(실무지원)** 대상 상장사 전체에 실무교육 참여를 요청하고, 수준별 교육을 지속 제공하여 상장사의 XBRL 주석 작성 이해도* 제고
 - * (기준) 기업 자율적 교육 이수 → (개선) 상장사 교육이수 여부 확인 및 참석 독려 등 XBRL 주석을 직접 작성하는 상장사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확대(별도 강좌 개설 등)하고,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어려운 제출인 등을 위한 온라인 강의 제공 확대
 - ※ 비금융업 상장사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금융업 상장사 → 각 소속 금융협회 등
- **(1:1컨설팅)** 분기당 1회 제공하던 1:1 점검 및 코칭*을 분기당 2~3회로 확대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의 XBRL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사항 등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XBRL 전문가와의 미팅('원포인트 레슨')을 제공 중

■ XBRL 재무공시 안착과 상장사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요 상장사*(14개 사)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

- 'XBRL 데이터 품질 자문그룹' 참여 상장사(14개 사): 강원랜드, 넷마블, 농심, 롯데지주, 아이에스동서, 케이티엔지, 크래프톤, 포스코퓨처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백화점, GS, HD한국조선해양, KG스틸, LG(가나다 순)
- 제출인 관점에서 'XBRL 재무제표 작성 매뉴얼' 검토 및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 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제공 예정

② 회계법인 XBRL 자문 품질 지원 강화 방안 (회계 유관기관과 협력)

■ 금융감독원

- (1:1 소통채널 구축) XBRL 자문 제공 회계법인과의 1:1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유의사항 안내, 피드백 및 기술지원 등을 적시 제공

■ 회계 유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 XBRL 본부 등)

- (실무지원 및 회계법인 품질 제고) 회계법인 대상 XBRL 전문 교육 연중 실시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헬프 데스크 지원 인력 보강 등
- (세미나 개최 등) 회계법인 및 상장사 등의 XBRL 재무공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학계 및 업계 등과 함께 XBRL 세미나 개최 등

6. 비금융업 상장법인 XBRL 주석 재무공시 – 평가

■ (개요)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법인(최초 적용그룹)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 (2024년 3월)부터 XBRL로 작성한 주석을 제출 중

- (2023년도 사업보고서) 첫 XBRL 주석 공시(2024년 3월, 156개 사)의 경우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제출한 XBRL 주석 중 일부(42개 사, 27%)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정정하여 공시를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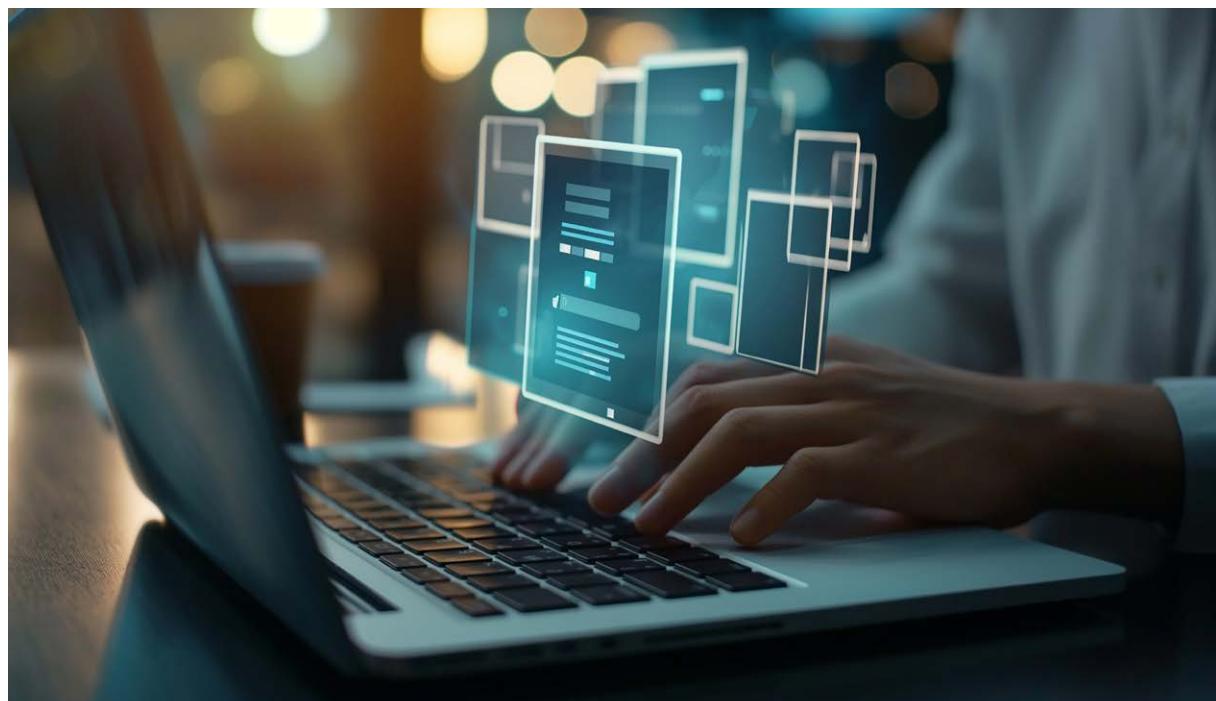
* XBRL 작성 규칙 미준수(계정과목 상·하위 관계 설정 등에 실수, 서로 다른 계정과목에 동일한 ID 부여 등), 감사보고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입력, 기업 보안프로그램 등이 XBRL작성 파일 일부 삭제 등

- (2024년도 1분기 보고서) 두 번째 XBRL 주석 공시(2024년 5월, 161개 사)는 주요 입력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실무교육도 제공하여 오류없이 모두 정상 제출

■ (평가) 상장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계법인의 XBRL 품질관리 강화로 최초 적용그룹의 재무공시가 안착되는 것으로 평가

7. 향후 계획

- XBRL 재무공시 안착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시스템 개선 (연중)
 -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지속 개선
-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 개정 (2024년 하반기)
 - XBRL 재무제표(금융업 주식) 제출 관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 개정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1. 도입 배경

-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
 - *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
-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음
 - * (국정과제 35)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계획
 - * 2023년 12월 11일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 예고 실시'
-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
-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2. 주요국 관련 규율 체계

- 주요국은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함
 -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함. 실제로 SEC는 2023년 일부 NFT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음
 - 일본의 경우, NFT의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2021년에는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간
 - * 증권(이익분배 여부) → 가상자산(경제적 기능 여부) →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가능성이 낮은 NFT
 - 독일의 경우, 금융감독청(BaFin)도 NFT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고, 결제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사례별 판단원칙을 제시함

3.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
-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1)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5가지 정형화된 증권^{*1}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 계약증권^{*2}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2 ① 공동사업, ② 금전등을 투자, ③ 주로 타인이 수행,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2)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
-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②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③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자 유의사항

-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임(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함
 -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 향후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5. 향후 대응 방안

-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1. 개요

- 2024년 6월 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024년 1월 2일 공포, 2024년 7월 3일 시행)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2024년 6월 11일 국무회의 통과)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
- 금번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주요 내용

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

-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며,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함

②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추가

-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함

③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를 추가

-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
-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④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3일 시행될 예정





Tax

(Korean Tax Update - Samil Commentary, July 2024)



Tax News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정부는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함.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배 구조 개선 등 기업 밸류업 가속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 등을 중점으로 마련됨. 주요 세제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확대 금액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예: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의 5% 세액공제
- 배당소득세: 상기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14% → 9%, 최대 45% → 25%)

②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③ 밸류업 기업의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대상) 중소·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한도) 최대 600억 원 → 1,200억 원
- (참고) 스케일업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 확대 예정

④ ISA 지원 확대

-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연 2천만 원·200만 원 → 연 4천만 원·500만 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1,000만 원)

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⑥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요 세제지원 방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 완화*

* (현행)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개정) [경력단절여성]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 폐지, [경력단절남성] 감면 신설

-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2024년 12월 → 2027년 12월)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 3년 연장(2024년 12월 → 2027년 12월) 및 공제요건 완화(공제납입 5년 → 3년)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소부장 기술 추가 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

6월 26일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분야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제지원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조특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추진
-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 추가 검토

②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시설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자문비 추가
 - * R&D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지원업무, 일반 사무, 기본운영체제 등 제외)
- 국가전략기술·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 기술 R&D 공제율 적용 (현행: 국가전략기술·일반 R&D 동시 연구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 공제율 적용)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③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 등(내용연수 3년) 수준으로 단축(5년 → 3년)



정부, 공급망 핵심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 추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6월 27일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함. 이번 추진전략은 공급망 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해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공급망 안정화 핵심기술의 R&D 촉진을 위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검토
 - ②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요건 완화*
- * (예)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현행 : 단독으로 100% 출자) 완화 등
- ③ 국내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 시 관세혜택 제공 방안 검토

정부, 경북·대구 등 8개 시도 20개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존 세제지원 등에 더해 추가 세제지원 등 마련 방침

정부는 지난 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왔고, 6월 20일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까지 접수된 지정 신청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경북·경남·대구·부산·대전·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시도에서는 200여 개 기업이 약 26조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정부는 집계함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해 발표된 법인세 7년 감면 등 세제지원 등에 더해 기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임.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상속세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① 일·가정 양립, ② 교육·돌봄, ③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의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 이번 대책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간주기간을 확대(5년 → 10년)하는 등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등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

국세청,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안내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함.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 기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한편,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힘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되나,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4년 4월 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7월 31일임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88호, 2024. 6. 25.)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14호, 2024. 6. 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15호, 2024. 6. 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616호, 2024. 6. 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5%'에서 '0%'로 인하하고, 계란가공품, 조주정, 냉동딸기 등 2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오렌지 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에서 10%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최신 예규·판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여부

■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일정 유형의 불공정 합병·증자·감자 등 불공정 자본거래(법령 §88 ① 8호 및 8호의 2, 이하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불공정 자본거래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그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령 §11 8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판례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불공정 자본거래(이번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불공정 자본거래 사례임)로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도 쟁점규정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쟁점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임

■ 판결요지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규정에서 이익분여자인 특수관계인을 법인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2000년 12월 29일 쟁점규정 개정 시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여 이익분여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은 불공정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인지 개인주주인지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쟁점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법2022누53299, 2023. 3. 21.)을 파기환송함(대법2023두39809, 2024. 6. 13.)

■ 시사점

- 종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통해 동일 쟁점에 대해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이라는 원심판결을 수긍해 왔으나(대법2017두50980, 2017. 10. 26. 심불기각),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에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었는 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쟁점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함에 따라 동 쟁점에 대한 논란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판결이나 동항 제8호에 따른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에 따르면,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자가 이익을 분여받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특수관계인이 개인주주인지 또는 법인주주인지와는 상관없이 분여받는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공정 자본거래 세무검토 시 필히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미환류 법인세액 포함 여부

■ 쟁점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3)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수혜법인·특정법인(이하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증령 §34의 3 ⑩, §34의 4 ④, §34의 5 ④,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수혜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조특법 §100의 32, 이하 ‘미환류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한 이번 유권해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는 미환류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규정에서 ‘법인세 상당액’이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즉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미환류 법인세액을 모두 포함한 법인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환류 법인세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주택 등 일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법인세 상당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 세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미환류 법인세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측면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기준-2023-법규재산-0125, 2024. 5. 13.)

■ 시사점

- 이번 유권해석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3)뿐만 아니라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4)과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상증법 §45의 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상당액’에 미환류 법인세액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해석으로 판단되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상당액’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뿐만 아니라 미환류 법인세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 쟁점사항

-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규정으로서(조특법 §29의 7), 이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 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26의 7 ② 및 §23 ⑩ 1호,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가 연속된 계약의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부터 상시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부터 상시 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규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상시근로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특령 §26의 7 ⑦),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해당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회신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 6. 19.)

■ 시사점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로 변경한 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등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으로 소급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의 증감인원을 판단하도록 주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 확대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 쟁점사항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조특법 §18의 2), 이 때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은 2022년 12월 31일 조특법 개정 시 해외 우수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 개정규정으로, 해당 개정규정의 부칙에서는 2023년 1월 1일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개정된 20년의 적용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2022. 12. 31. 개정 조특법 부칙 §10, 이하 ‘쟁점 부칙’).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개시한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 당시 근무기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쟁점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결정요지

-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2023년 1월 1일 당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개정규정의 부칙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2022. 12. 31. 개정 조특법 부칙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조심2023서10372, 2024. 4. 30.)

■ 시사점

- 이번 결정례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개정된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쟁점 부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 이와 달리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때 과세특례 적용기간 20년의 기산일이 되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에 대해 유권해석은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근로를 재개한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재개일을,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을 각각 기산일로 하여 20년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 2. 21., 사전-2023-법규국조-0624, 2023. 11. 17.)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K SOX

내부회계관리제도

K SOX 동향

제5회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및 보고서 발간 안내

삼일회계법인 Risk Assurance 그룹은 지난 2024년 6월 20일에 다섯 번째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약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동시에 약 250명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준수, 기업의 현실 고려, 부정행위 사전 예방, 기업 밸류업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강조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최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이슈와 교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의 이슈와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 지속가능성보고와 내부통제:**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데이터 인사이트:** 데이터 활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확실성 시대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전통적인 내부통제 방법을 탈피하여 디지털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밸류업을 위한 효과적인 부정위험 방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내부통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Risk Assurance 그룹은 '내부통제 미래전략 Volume 5.0'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와 영상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및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 [보고서] 내부통제 미래전략 Volume 5.0: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 – [삼일회계법인]
- [YouTube] 제5회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다시보기) – 내부통제 밸류업 방안(Full Ver.) – [삼일회계법인]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안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7월 2일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여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서에는 총 8개의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상 책무의 개념, 배분, 범위, 이행, 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부 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및 운영 방안도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Click)

-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 7. 2]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 은 영 Managing Director
02-709-0824
eunyoung.lee@pwc.com

Sustainability

권 미 엽 Partner
02-709-7938
miyop.kwon@pwc.com

GAAP

홍 윤 기 Partner
02-709-7901
karen.hong@pwc.com

GAAS

박 성 훈 Partner
02-709-4786
sung-hoon_1.park@pwc.com

Tax

조 영 현 Director
02-3781-9238
young-hyun.jo@pwc.com

K SOX

김 미 진 Director
02-3781-9237
mijin.kim@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7A-NL-007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